

도서관 리스크관리와 보험

Library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정혜경*
Hye-Kyoung Chung

= 초 록 =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리스크의 인지, 리스크의 측정, 리스크 처리기법의 선택, 실행, 평가를 통한 리스크관리과정은 對物리스크, 賠償責任리스크, 人事리스크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자를 선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보험가입에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제한적인 공제회의 보장대상은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충분한 리스크의 담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서관 리스크관리의 개선과 보험의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키워드 =

도서관, 리스크관리, 리스크처리기법, 보험

ABSTRACT

The potential risks, involved with the management of a library, may cause a tremendous economic loss, so require a systematic management. The risk management process, consisting of risk identification, risk measurement, selection of risk treatment method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uggests the use of insurance to deal with property risks, liability risks, and personnel risks. For the systematic risk management of a library, risk manager should be appointed to be responsible for program development and insurance purchase. The limited coverage of library risks, provided by

*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보자료실장
(Head, KDI School Library)

the school cooperative society,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mprove the library risk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in a systematic and realistic way.

KEYWORDS

Library, Risk Management, Risk Treatment Method, Insurance

1. 서 론

모든 활동에는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걱정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을 본 논문에서는 리스크라 정의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으로 인한 가옥의 소실 등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듯이,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된 제품 운송시 트럭이나 선박사고 등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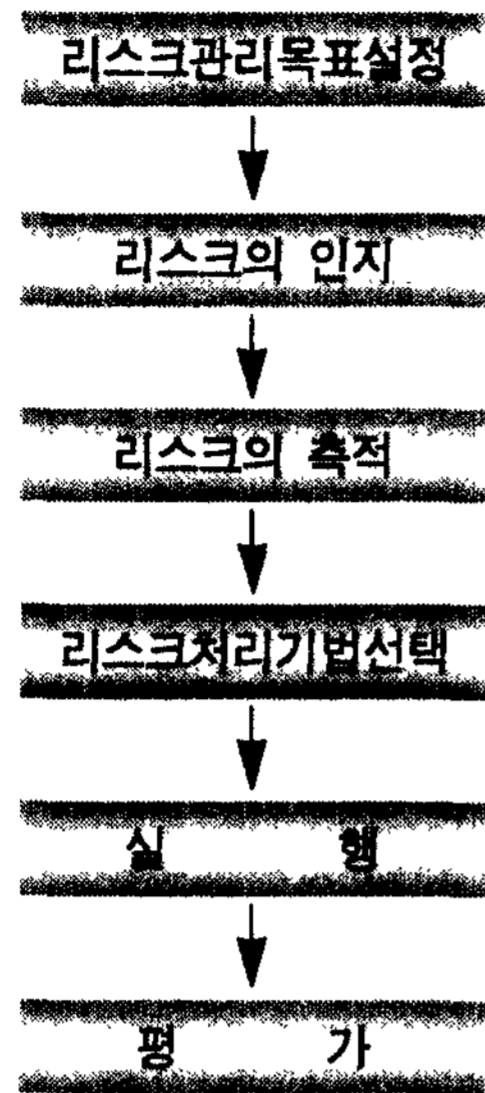
많은 장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는 화재, 전열기구의 폭발 등 부주의로 인한 재해를 비롯하여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전산장비의 誤作動으로 인한 자료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다.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리스크의 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 도서관 운영에 내재된 리스크의

관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보고서나 발표된 논문 한 편 아직까지 변변히 없다는 것은 우리 문헌정보학계로 봐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며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에 적절한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내의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서관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처리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념과 그 과정을 도서관 운영에 연계하여 설명하고, 리스크관리의 가장 보편적인 기법인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제 3장에서는 도서관의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도구로서의 보험의 역할

〈그림 1〉 리스크관리과정



과 적용대상에 대해 논의한다. 본문 내용에 대한 요약과 향후 도서관의 리스크관리분야에 대한 연구에의 제언을 제 4장에 기술한다.

2. 리스크관리

2.1 리스크의 정의

리스크의 일반적인 정의는 경제적 손실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 순수리스크(pure risk)와 투기리스크(speculative risk)로 분류된다. 순수리스크는 화재, 풍수해, 자동차충돌, 도난 등과 같이 손실만을 초래하는 리스크이며, 투기리스크는 주택구입, 주식매입 등과 같이 손실이나 이익을 함께 볼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도서관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내부에 장치되는 각종 시설물과 자료들은 화재리스크와 도난리스크 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에 두 종류의 리스크가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리스크관리 분야에서는 대상을 순수리스크로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투기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기관의 재무관리나 자산운용의 주요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는 한 기관의 物的·人的 자산을 우발적인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하여 공공이익, 인류의 안전, 환경요소와 법률에 부응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출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1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활동이다.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시키는 리스크는 순수리스크에 국한되며, 리스크의 관리는 그 기관에 최소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리스크관리의 단계적 과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리스크의 認知, 리스크 분석 및 측정, 최적의 리스크 처리기법 선택, 선택된 기법의 실행, 그리고 모니터 및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는데, 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으로 살펴보자.

2.3 리스크의 認知

리스크관리 과정의 첫 단계는 리스크의 인지로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 이유는 인지가 안된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면 도서관 자체가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며, 이는 도서관 운영상 예기치 않은 거대한 재정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 자동화와 데이터 프로세싱 도구들은 도서관 직원들에게 인지가 안된 상태로 오류에 노출되어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리스크 인지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재무제표 분석, 현장답사,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이 있다. 재무제표 분석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단으로 도서관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자산들이 어떠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인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장답사는 도서관의 각 부서를 방문하여 부서별로 리스크 노출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며, 업무프로세스 분석은 도서관업무 즉, 도서 및 자료를 주문하는 업무에서부터 검수 및 접수하는 업무, 분류업무, 도서관내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플로우 차트(flow chart)에 그려서 각 프로세스마다 수반되는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 인지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이나 개축 건물에도 새로이 설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면 화재보험의 요율을 인하해 주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시스템 그 자체가 새로운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스프링클러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漏水 사고가 이에 속한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4 리스크 분석 및 측정

인지된 리스크 처리기법을 선택하기 전에 분석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된 리스크는 크게 순수리스크와 투기리스크로 분류되었지만, 리스크관리의 대상인 순수리스크는 다시 對物리스크(property risk), 賠償責任리스크(liability risk), 人事리스크(personnel risk)로 분류된다. 도서관 운영의 對物리스크는 건물, 기자재, 장서, 자료, 미술품 등 대부분의 도서관 내외부에 노출된 리스크가 여기에 속하는 반면, 賠償責任리스크는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이용 도중 도서관 측의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입는 경우 등이 속한다. 그리고, 人事리스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리스크로서, 도서관 직원들의 예기치 않는 사망이나 질병 등의 재해가 해당된다.

〈표 1〉 리스크 처리기법의 분류

통제 (risk control)	회피 (avoidance)	
	손해 예방 (loss prevention)	
	손해 경감 (loss reduction)	
	조합 (combination)	
	분리 (segregation)	
	전이 (transfer)	
금융 (risk financing)	보유 (retention)	흡수 (absorption)
		자가보험 (self-insurance)
		캡티브 (captive) 설립
		자기공제 (deductible)
	전이 (transfer)	보험 (insurance)
		보증 (bonding)

이렇게 인지되어 분류된 리스크들은 리스크의 발생빈도(frequency), 리스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severity), 그리고 리스크 발생의 변화성(variation)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이는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도서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고, 일정기간동안 발생했던 도서관 건물의 화재 중 최대손실가능액, 화재로 인한 손실액의 표준편차를 추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서 처리기법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2.5 리스크 처리기법의 선택

도서관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한 후에는 각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선택하는 일

이 따르게 되는데, 어떠한 기법들이 사용되며 어떠한 기준으로 최적의 기법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리스크 처리기법은 〈표 1〉에 분류되어 있듯이 크게 제어(control)기법과 금융(financing)기법으로 나뉘어진다.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인 회피(avoidance),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인 경감(reduction), 그리고 제3자에게 리스크를 이전시키는 방법인 전이(transfer) 등은 제어기법에 속하고, 리스크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하는 보유(retention)기법과 재정적 손실을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보험(insurance)기법 등은 금융기법에 속한다. 통제기법은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시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는 반면에, 금융기법은 리스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재정적 부담을 질 것인지 그에 따른 수단이 된다.

리스크 처리기법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 회피기법의 예로는 시설물 피해 가능성이 높은 태권도 강습이나 행사를 도서관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다거나 도난의 위험성이 높은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경감기법의 예는 도서관 내에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할 경우 주최하는 기관에서 행사에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전이기법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도서관의 자체 예산항목에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화재나 기타 리스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시 피해비용을 충당토록 하는 것은 보유기법의 대표적인 예인 반면, 보험회사에 화재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가입시킴으로써 도서관운영에 수반되는 화재리스크, 상해리스크, 사망리스크 등을 이전시키는 것은 재정적 전이기법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처리기법 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도출해 내는 것이 리스크관리자의 역할인데, 각 도서관의 기능, 건물의 소재 및 구조, 방재시설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처리기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시

립도서관 등 일반적 대중을 고객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고가품 및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되는 기자재나 자료 등을 사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회피기법을 사용하기가 용이할 것이고, 특수대학원 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는 그 기능상 회피기법 사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이 독립건물인 경우와 부속건물인 경우도 서로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 건물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이미 경감기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기법을 조합시키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기법이 최적의 리스크처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험가입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이 조합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이다.

2.6 실행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기법이 선택되면 다음 단계는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즉, 리스크 제어기법과 금융기법의 조합을 통해 도서관 리스크관리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서관의 경우라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치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인 처리기법이 될텐데,

실행단계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설치할 것인지, 화재보험의 담보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어떤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전문가의 조언과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충분한 정보입수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어진 예산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2.7 모니터링 및 평가

보험계약 체결 및 도서관 건물내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리스크 처리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따라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년도 말에는 한 해 동안의 리스크관리의 실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도서관 내의 시설물과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일부 리스크는 死藏되기도 하고, 새로운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발생함과 아울러 리스크의 주요 처리기법인 보험의 시장 변화 등은 1년 전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의 적합성에 의문을 갖게 해준다.

도서관의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은 변화가 발생하는 것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서관이 재정적 거대손실의 위험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3. 보험의 기능과 적용

3.1 보험의 정의

앞장에서 소개된 보험은 리스크관리의 주요 처리기법으로서 거의 모든 기업, 공공기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보험이란 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한 당사자(보험계약자)에게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당사자(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 대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3.2 보험의 기능

보험은 계약에 의하여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며 걱정과 두려움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의사결정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예기치 않는 거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도록 해 줌으로써 가정과 기업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험은 또한 은행의 대출 등에 있어서 고객의 신용기준으로 요구·활용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험료는 축적되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금으로 전환되어 민간부문의 재투자를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다.

3.3 보험의 적용

제 2장의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언급된 도서관 운영상 수반되는 세 종류의 리스크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보험상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국내 도서관에서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본 후에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3.3.1 對物리스크

도서관의 대물리스크로는 도서관과 부속건물, 장서, 기자재, 미술품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을 화재, 폭발, 도난, 풍수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화재보험과 動産종합보험 등이 있다. 그 중에서 古書나 미술품 등은 보상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도서관과 보험회사가 합의하여 보험계약시 명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확한 재물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부정확한 재물(inventory)조사로 인해 도서관내의 보험대상 항목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에서는 최소한 연 1회 정확한 재물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보험가 책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도 정확한 기준에 맞추어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3.2 賠償責任리스크

도서관의 배상책임리스크는 도서관내 시설물 이용이나 서비스 중에 발생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리스크로 인체사고나 재산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배상책임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으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국내 도서관들의 경우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공하는 도시가스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사고시 보상을 해주는 사고배상책임보험 정도를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추세는 대물리스크로 인한 손해액보다 배상책임리스크로 인한 손해액이 훨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보장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제 3자인 도서관 이용자들이 피해보상을 위해 법정 소송으로 비화시킬 경우 소송에 따른 제반 경비 및 보상금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3.3 人事리스크

도서관 직원들이 업무상 노출될

수 있는 상해, 질병, 사망 등의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리스크이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잠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할 때 은퇴 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정적인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과 장기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간병보험 등은 최근에 급격히 수요가 급증되는 상품으로서 독립도서관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강제보험의 형태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을 담보해주는 보험이 요구되고 있다.

3.3.4 영업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상품은 담보지역 내에서 약관상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제조업자, 임차자, 발주자, 선박수리업자, 차량정비업자, 주차장업자, 항만하역업자, 학교경영자, 창고업자, 경비업자, 곤도라운영자, 건설기계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계 공동상품으로 1964년 최초인가를 받은 상품이다. 국내 대부

분의 도서관은 주로 대학도서관 위주이던 것이 최근 지방자치제가 시행·확산되면서 독립건물을 가진 공공도서관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서관 만을 위한 특별약관은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면 도서관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사고나 도서관내에서 직원들의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에 의해 야기된 법정 소송의 방어비용, 클레임 지급금이 이에 해당된다. 신체사고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보장기준은 손해의 발생시점이나 클레임의 청구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의 차이는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발생시점기준 계약은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신체부상이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해 준다. 반면에, 클레임시점 기준의 보험은 클레임이 접수되는 시점에 계약이 유효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계약방식은 클레임이 접수될 때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보장상의 갭(gap)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검토하거나 정의할 때에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3.5 화재보험

앞에서 설명한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財物保險은 보장의 當事者(first-party)인 도서관을 재산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이다. 제 3자 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처리가 되기 위해서 도서관 측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보험인 재물보험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담보된 리스크 손실인 경우이면 보험처리가 된다.

재물보험은 두 종류의 담보가 있는데 記名리스크(named perils)와 쏘리스크(all risk) 계약으로 나뉜다. 記名리스크 계약은 화재, 번개, 폭풍, 폭발, 해일 등 특정 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 주며, 보험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명시된 리스크로부터 초래했음을 제시하면 된다. 보다 광범위하고 바람직스러운 보험 계약은 특정 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리스크를 담보해 주는 쏘리스크 계약이다. 이 경우 보험처리에 대한 증명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서, 클레임 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손해를 초래한 리스크가 약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해야만 한다.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의 대표적인 예로서 도서관의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기본적으로 담보하며, 화재위험이 있는 일반 건물이 담보대상

이 된다. 우리나라에 화재보험이 최초로 인가된 것은 1969년으로서 손해보험 공동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 제 3자보험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도서관 건물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스크관리의 대상이 도서관 건물과 건물내의 각종 시설에 주는 손실뿐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에 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로 인하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 된 것이다.

4. 결론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의 정보화 사회 건설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정보화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도서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논의는 문헌정보학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분야인 반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본 논고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있는 논의를 통해 도서관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도서관의 리스크관리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도서관의

물적·인적 자산을 예기치 않는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과정은 리스크의 인지, 리스크의 측정, 최적의 리스크 처리기법 선택, 선택된 처리기법의 실행, 그리고 실행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로 구성된다.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일이다. 리스크를 처리하는 기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도서관의 리스크도 대물리스크, 배상책임리스크, 인사리스크의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해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은 주로 대학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공도서관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국립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대상목적물에 대한 보장은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제 3자 보장인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장상의 문제로 학교재해복구공제회는 도서관의 動産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늘어만 가는 도서관의 시설물과 기자재 등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장대상 확대나 민영보험의 활용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분야라고 본다.

사립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공제회가 아닌 보험회사의 보장상품을 통해 내재된 리스크를 보장해야 하는 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도서관에 대한 보험가입은 화재보험이나 도시가스배상책임보험 정도로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도 動産종합보험에 도서관소유자에 대한 특별약관을 만들어 특화상품화 하는 데에 소극적이었고, 실제로는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 도서관에서 가입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리스크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선임하여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산이나 인명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보험상품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위해서 주로 외국의 사례들과 일부 국내 도서관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적용점을 논의하였다. 향후 연구는 광범위한 국내 도서관 책임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리스크관리의 개선방향과 보험의 적용방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rawner, L. B., 1993,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for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Vol. 13(1): 5-15.
- Griffith, J. W., 1983, "After the Disaster: Restoring Library Service," *Wilson Library Bulletin*: 258-265.
- Mika, J. J. and Shuman, B. A., 1988, "Legal Issues affecting Libraries and Librarians," *American Libraries*: 108-112.
- Ungarelli, D. L., 1989, "Insurance, Protection and Prevention: Are Our Libraries Safe from Losses?," *Library & Archival Security*, Vol. 9(1): 45-49.
- Ungarelli, D. L., 1990, "Insurance, Protection and Prevention," *Library & Archival Security*, Vol. 9(3/4): 83-87.
- Williams, Jr., C. A., M. L. Smith, and P. C. Young, 1995,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7th edition, McGraw- Hill.